

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응급의료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9 월 23 일

여 수 시 장

서애복



여수시 조례 제2307호

붙임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보호하는데”를 “보호하는 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자동제세 동기(AED)”란”을 ““자동심장충격기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자동제세동기”를 각각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)”를 “(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에서는 “설치권장 시설””을 “조에서 “설치권장시설””로, “자동제세동기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인원, 응급의료 접근성,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

지정,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자동제세동기”를 “시민의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 및 자동심장충격기”로, “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”을 “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2.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·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·홍보
3.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관계 법령, 조례 및 재정지원의 목적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아니 할”을 “아니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<u>보호하는데</u>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하는 데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“응급환자”란 질병, 분만(分娩),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---.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 <u>자동제세동기(AED)</u> ”란 급	5. “ <u>자동심장충격기</u> ”란 -----

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.

6. “응급차량”이란 법 제44조의 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,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.

제4조(응급의료의 지원)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
2.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
3. 4. (생략)

제5조(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)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는 “설치권장 시설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

-----.

<삭 제>

제4조(응급의료의 지원) -----

-----.

1. 자동심장충격기-----

2. 자동심장충격기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) ① -----

----- 조에서 “설치권장시설”-----
----- 자동심장충격기---

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,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인원, 응급의료 접근성,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,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) ----- 시민의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 및 자동심장충격기---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--.

1.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
의 장의 의무) 제4조에 따라
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
의료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의
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
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2. 관계법령 및 조례, 시장의 지
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
야 한다.

제8조(재정지원 취소 등) 시장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
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
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
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
할 때

2. 3. (생 략)

처치에 관한 교육

2.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·사
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·홍
보

3.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
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제7조(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
의 장의 의무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관계 법령, 조례 및 재정지원
의 목적과 조건을 준수하여야
한다.

제8조(재정지원 취소 등) -----

----- 경우에는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아니
할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